의안번호	2201382
의 뢰 인	김선교 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계번호	24F163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–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1,899억원, 2027년 1,449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5,006억원(연평균 1,669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)	-1,899	-1,659	-1,449	-5,006	-1,66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(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)	○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- 감면대상 확대: (현행)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(개정안)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- 적용기간 연장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(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○ 향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 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
-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
❑ 향후 자녀 기준 확대(3자녀→2자녀)로 인한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가정

○ (2자녀 이하 가구 자동차 취득건수 추정)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가구의 비중(6.1%=감면건수/가구수)이 2자녀 양육 가구도 같을 것으로 가정

-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(2023.10.)에 따른 2022년 기준 다자녀(3자녀) 양육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는 27,747건(481억원)
-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 상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전체 가구수(2022년 기준)는 469.1만가구이며, 그 가운데 2자녀 가구는 224.5만가구, 3자녀 이상 가구는 45.6만가구로 집계[1)]
- 「2023년 지방세통계연감」(2023.10)의 최근 자료(2022년 기준)와 맞추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는 2022년 기준을 적용

○ (향후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 건수 전망) 향후 2자녀 이상 양육가구의 자동차 취득건수는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 감소율 16.0%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가정

1) [표] 미성년자 양육 가구수 현황: 2022년

(단위: 가구)

구 분	합 계	1자녀	2자녀	3자녀 이상
가구수	4,690,686	1,989,297	2,245,478	455,911

자료: 통계청(인구총조사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(향후 1건당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) 최근 3년(2020~2022년)간의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1건당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(4.0%)을 반영한 감면액이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

○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

-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,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,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,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- 다만,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

○ 상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체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

-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
-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
-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

○ 개정안에 따른 조정사항

- 18세 미만의 자녀 요건: (현행) 3자녀 이상 → (개정안) 2자녀 이상
- 적용기간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630억원(39,333건)에서 2022년 481억원(27,747건)으로 감소추세(건수 16.0%, 감면액 12.6%)

○ 1건당 감면액은 2020년 160만원에서 2022년 173만원으로 증가추세(4.0%)

[표 2]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

구분	2020	2021	2022	합계	연평균 증가율
건수(건)=A	39,333	34,928	27,747	102,008	−16.0%
취득세 감면액 (억원)=B	630	597	481	1,708	−12.6%
1건당 감면액 (만원)=B/A	160	171	173	−	4.0%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❑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5년 1,899억원, 2027년 1,449억원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,006억원(연평균 1,669억원)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향후 2자녀 이상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건수는 2022년 기준 2자녀 이상 가구(270.1만가구)에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가운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중 6.1%와 최근 3년(2020~2022년) 3자녀 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득건수 연평균 감소율(16.0%) 적용하여 추계

○ 향후 2자녀 이상 양육자의 취득 자동차 1건당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3자녀 이상 양육자 1건당 자동차 취득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(4.0%) 적용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 감소액

(단위: 가구,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가구수(A)	97,635	82,004	68,875	248,514	82,838
1건당 감면액(B)	194만원	202만원	210만원	−	−
취득세 감소액(A×C)	1,899	1,659	1,449	5,006	1,669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